

3. 학생단체등록과 운영 및 활동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62조에 의하여 학생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함)의 등록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단체의 정의) 단체란 본교의 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,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등록요건)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학칙 제16장 및 학생회 회칙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것
2. 소속단체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15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. 단, 15명 이하인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(2022.04.22.개정)
3.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 또는 학부(과)생을 대상으로 할 것 (2017.5.1.개정)
4.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
5.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승낙을 받을 것

제4조(등록절차) ①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각 2부 작성하여 매학년 초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1. 단체승인신청서
2. 지도교수 취임승락서
3. 회칙
4.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
5. 15인 이상의 발기인 명단 (2022.04.22.개정)
6. 발기인 총회 회의록

② 단체는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단체 재등록 신청서
2. 회칙
3. 임원명단
4. 회원명단
5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
6. 신년도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
7. 이상의 구비서류에 대한 지도교수의 의견서

제5조(승인) 제4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마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.(2009.6.24. 자구수정)(2020.4.21. 개정)

제6조(대표의 선출과 임기) ① 단체의 대표는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다. 다만, 대표가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② 대표의 임기는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

③ 대표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보선하여 그 결과를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제7조(지도교수) ①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본교 교원(겸임교원 포함)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

-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 이상의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.
- ③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하여야 한다. (2009.6.24. 추가삽입)
- ④ 지도교수가 장기출장(1개월 이상)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
-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취임승낙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제8조(재정) ①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

- ② 학생지원처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(2019.2.8.개정)
- ③ 단체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 교수를 경유,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- ④ 총학생회비 요청 시는 학생지원처를 경유하여야 한다. (2009.6.24. 추가삽입)(2019.2.8.개정)

제9조(단체의 활동)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- ② 모든 행사는 소정의 행사계획서를 지도교수(학과 및 학부 행사인 경우 학과장 및 학부장)에게 제출하여 학생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- ③ 행사가 정상수업과 중복될 때에는 지도교수(학과 및 학부 행사인 경우 학과장 및 학부장)의 수업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- ④ 각 단체의 야간옥외 집회는 학교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아니한다.

⑤ 부득이 야간옥외집회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

⑥ 야간 옥외집회시에 햇불, 모닥불 등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⑦ 행사에 관한 홍보물(게시물, 현수막, 프로그램, 팸플렛, 티켓, 기타 유인물)의 제작은,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사전지도와 학생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 인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⑧ 모든 게시물은 학생지원처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 게시판에 부착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⑨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종료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.

⑩ 단체는 각 행사의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집회허가원의 제출절차) ① 학과 단위의 학생행사인 경우

1. 학생대표가 집회허가원을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한다. (2019.2.8.개정)(2020.4.21. 개정)

2. 학생회비 요청시에는 학교당국을 경유하여야 한다.

② <삭제>(2020.4.21. 삭제)

③ 학생활동반(동아리) 단위의 학생행사인 경우

1. 학생활동반 대표자는 지도교수로부터 집회허가원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

한다. (2019.2.8.개정)

2. 학생회비 요청시에는 학교 당국을 경유하여야 한다.

제11조(행사계획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) ① 단체의 정기 (월례 및 주례) 집회는 단체등록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집회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.

② 삭제 (2009.6.24. 삭제)

③ 학술·예술·체육행사·타교와의 연합행사는 행사개최 14일 전에 행사내용 설명서, 예산서, 주제내용 요약, 홍보물제작배부허가원, 지도교수의견서, 주제내용요약서등을 첨부하여 행사계획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④ 삭제 (2009.6.24. 삭제)

⑤ 타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③항의 서류 및 참가교 동의서를 첨부한 행사계획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제12조(간행물의 발간허가신청) ① 본교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, 부정기의 간행물은 인쇄물 발간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② 편집, 인쇄 및 배부는 학칙의 규정에 의한다.

③ 그 밖의 자세한 것은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13조(봉사활동) ① 단체의 단원이 20명 이상, 봉사기간은 연속 10일 이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방학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방학 시작 5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지도교수 경유,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1. 봉사활동계획서

2. 예산서

3. 참가학생 명단

4. 봉사관할기관 동의서

② 삭제 (2009.6.24. 삭제)

③ 봉사활동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봉사활동 실행 계획서를 봉사개시 14일 전에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④ 삭제 (2009.6.24. 삭제)

⑤ 삭제 (2009.6.24. 삭제)

⑥ 삭제 (2009.6.24. 삭제)

⑦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봉사활동 실적서, 결산서 및 자체평가, 참가 학생명단을 학생지원처장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제14조(단체의 자격상실)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.

1. 우리 대학교 창립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

2. 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3. 학생회 회칙 및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
4. 1년간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

5. 지도교수 사임서가 수리된 이후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

6. 본 규정을 어겼을 경우

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통폐합할 수 있다.

③ 단체를 자체적으로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로부터 해체 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 사유서와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,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09.6.24. 자구수정)(2019.2.8.개정)

제15조(본 규정의 개폐)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(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)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